

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2005년도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 : 2004. 12. 1

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
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59호

2. 제안사유

○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세입·세출안 제출시 의회에
기금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

○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기금을 운용
하기 위함.

3. 기금운용계획안 주요내용

(단 위 : 천원)

구 분	2004년말 현 재 액	2005년 운용계획안			2005년말 현 재 액
		수 입	지 출	증 감	
계	573,486	88,756	0	88,756	662,242
재해대책기금	456,146	71,045	0	71,045	527,191
재난관리기금	117,340	17,711	0	17,711	135,051

4. 검토의견

□ 재해대책기금

-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예방시설 및 응급복구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하는 기금으로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 징수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재원으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편성된 기금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확인됨.
 - 최근 3년간 지방보통세는 8,755,567천원임.
- 2005년도 기금운용안은 전년도 이월금 456,146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0,045천원, 예금이자수입 1,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, 지출계획은 없음.
-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부터 적리된 것으로 '99년 우량추정 장비구입에 34,095천원, '02년 소하천정비, 제설장비구입등에 145,100천원, '03년 하천정비사업등에 10,180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원래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.

□ 재난관리기금
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보통세의 최근 3년간 결산액 평균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운영되는 것으로 편성된 기금안은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임.
 - 2005년도 기금운용안을 전년도 이월금 117,340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7,177 ~~16,761~~천원, 예금이자수입 2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, 지출계획은 없음.
 - 재해대책기금은 1998년부터 적리된 것으로 그 동안 지출실적이 없음.
- ※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된 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”이 2004.3.11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기 기금의 운영조례를 변경할 예정으로 있어 통합된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도 통합하여 운영할 것으로 앞으로는 기금의 적립 보다는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.